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63
------	------

2019. 11. 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11.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가. ‘독립영화 활성화’는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 및 서울 영상콘텐츠의 다

양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독립영화 활성화

나. 위탁기간 : 3년 (2020.1.~2022.12.)

다. 소요예산 : 1,164백만원('20년 예산)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 배경 독립영화 제작 지원
- 영화제 협력을 통한 독립영화 제작 지원
-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 독립영화 시사회 개최 지원
-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 및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독립영화 활성화’는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독립영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영화관련 경험 및 역량이 축적된 전문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의 제작, 유통·상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독립영화 활성화 사업 현황

- 서울시는 상업자본과 배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로 제작하는 실험성이 강한 독립영화를 육성하고, 영화 산업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독립영화 활성화 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 있음.
- 그 동안 이 사업은 영화창작공간 운영 등 3개의 사업과 통합되어 일괄 민간위탁되었으나, 영상산업의 성격과 내용에 맞춰 각각 분리해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음(2019.8).

<영상산업 지원 사업 개편 현황>

사무명	
서울촬영 지원 (민간보조)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 지원
	영화 창작공간 운영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사무명
서울촬영 지원 (민간위탁)
영화 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 현재 독립영화 활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 배급·유통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서울영상위원회 개요>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02. 2. 19.)
- 설립목적 : 국내·외 영화촬영 및 제작지원, 서울 영상산업 관련 사업 추진
- 소재지 : DMC첨단산업센터 내
 -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C동 114호
- 대표 : 이장호(영화감독)
- 조직구성 : 임원 18인 / 1처 6팀 1센터

- 독립영화 제작 지원은 서울배경이 30% 이상인 독립 장·단편 극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심사해 직접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영화제와 협력으로 수상작품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음.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 개요>

■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

- 지원대상 : 독립 장·단편 극영화, 다큐멘터리로 서울배경이 30%이상인 작품
(애니메이션 제외)
- 지원자격 : 독립 장·단편 극영화, 다큐멘터리를 기획개발 또는 촬영하고 있는 감독
- 지원내용 : 장편(60분 이상) 최대 5천만원, 단편(60분 이내) 최대 1천만원
- 지원규모 : 30편 내외로 심사위원회 결정

■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지원

- 지원대상 : 안정적인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또는 계획인) 영화제의 사전제작 지원 프로그램
-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영화제
 - 집행위원회와 전문 프로그래머(팀)가 구성되어 있는 영화제

- 최근 3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영화제를 개최한 영화제
 - 영화제 참여 감독을 대상으로 사전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 영화제
 - 공개적으로 작품을 모집하고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작품을 선정하는 영화제
- 지원규모 : 3개 내외 영화제를 통해 3~6개 작품 지원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독립영화 제작지원은 해마다 목표와 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며,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지원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독립영화 제작 지원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말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	목표	20편 내외	25편 내외	27편 내외
	실적	24편	26편	29편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지원	목표	4~8편	사업미시행	2~6편
	실적	15편	사업미시행	8편

- 독립영화 배급·유통 지원은 독립영화공간을 통한 정기 쇼케이스 진행, 공공·민간시설을 이용한 공공상영회 개최, 독립영화와 고전영화의 전용관 운영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독립영화 배급 및 유통 지원 사업 개요>

■ 쇼케이스 개최

- 사업추진 : 서울영상위원회, 한국독립영화협회 공동주최
- 상영횟수 : 연 12회 이내(※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횟수 조정 가능)
- 상영일정 : 정기상영전 매월 2, 4째 화요일(월 2회 진행)
장편영화 기획전 상·하반기 각 3회(7월, 11월)
- 상영장소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한국영상자료원
- 초청대상 : 영화관계자, 평론가, 일반 관객
- 참여방법 :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한 무료 관람

■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개최

- 사업기간 : '19년 3월 ~ 12월(10개월)
- 상영장소 : 서울시내 공공문화시설 및 마을미디어상영관 총 65개소 이내
- 상영시간 : 상영관별 상이(주 1회, 월 2회, 월 1회 상영시간 탄력 편성)
- 상영횟수 : 연간 950회 이내
- 상영작품 : 최근 개봉 독립영화 및 주제별 상영작품 연간 약 40편
- 관람방법 : 선착순 무료관람

■ 독립·고전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 지원방식 : 연간 상영일수의 60%이상 독립 또는 고전 영화상영이 가능한 전용관 지정(각각 1개) 및 지원
- 지원내용 : 전용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
- 지원금액 : 독립 1억5천만원, 고전 2억원
(전용관 임대 및 관리비는 지원금의 80% 이내, 인건비로 사용 불가)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쇼케이스 개최와 전용관 운영 지원은 목표에 맞춰 추진되었으나, 공공상영회 개최는 상영관 확보와 상영횟수에 있어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독립영화 배급 및 유통 지원 실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말
쇼케이스 개최	목표	15회	12회	12회
	실적	15회	12회	12회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개최	목표	65개소 680회	65개소 800회	65개소 950회
	실적	59개소 695회	61개소 771회	65개소 729회
독립·고전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목표	3~4개관	3~4개관	2개관
	실적	4개관	4개관	2개관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자본과 배급에 있어 상업영화에 비해 열악한 독립영화의 제작·배급·유통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를 활성화 하고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제작 분야와 함께 배급·유통 분야 까지 영화 산업 전반에 걸친 경험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서울시 직영보다 민간위탁 사업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됨.
- 다만, 독립영화 상영회의 경우 상영회 개최 횟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총 관람객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공상영관 확대와 상영작 추천방식의 변경 등 사업추진 방식의 전면적 개선이 요구됨.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 실적>

구분		2017	2018	2019년 10월말
상영회 개최횟수	목표	680회	800회	950회
	실적	695회	771회	729회
관람객수	목표	12,000명	11,000명	13,000명
	실적	11,027명	11,701명	9,957명
상영관 개소수	목표	65개소	65개소	65개소
	실적	59개소	61개소	65개소

- 한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여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가 수립한 자체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63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독립영화 활성화'는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 및 서울 영상 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 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독립영화 활성화
- 나. 위탁기간 : 3년 (2020.1.~2022.12.)
- 다. 소요예산 : 1,164백만원('20년 예산)
-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 배경 독립영화 제작 지원
- 영화제 협력을 통한 독립영화 제작 지원
-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 독립영화 시사회 개최 지원
-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 및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독립영화 활성화’는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독립영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영화관련 경험 및 역량이 축적된 전문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콘텐츠산업팀 이효리 (☎ 2133-5236)